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841
------------	-----

'99. 10. 29

1. 제안이유

- 본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 공적심사 위원회 위원을 보강하여 공적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의하므로써 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본위원회 소집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사항을 기록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을 보면

- 본 규정 제11조 (의회공적 심사위원회) 제2항중 “운영위원회 위원1인 및 전문위원 1인으로”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4인이내”로 하며
- 제1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 보관한다”로 하는 내용으로써

3. 검토의견

- 성남시의회 포상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 포상함에 있어 공적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므로써 당연히 포상을 받을 사람이 받는다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 포상심사 위원의 선임권자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별 배분비율을 맞추며 직무의 소관으로 볼 때 본 규정 개정안 제11조 제2항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 4인이내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각상임위원회 별 소속위원 1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본 규정 개정안 제11조 제3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한 조치이나 이경우
 - ①신청서류 제출기일의 촉박과
 - ②포상 신청서류(공적조서) 미비에 따른 보완조치
 - ③회의소집 및 심의과정이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포상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